

방제선등의 배치에 관한 법적 고찰

임채현* · 윤종휘*** · 이은방** · 장하용*** · 김태형**

* 목포해양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 한국항만연수원

An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respect of deployment of Oil Spill Response Vessel and etc.

Chae-Hyun Lim* · Jong-Hwui Yun*** · Eun-Bang Lee** · Ha-Lyong Jang*** · Tae-Hyung Kim**

*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Korea Port Training Institute

핵심용어 : 방제선, 방제장비, 배치, 선박소유자, 해양시설

Key Words : Oil spill response vessel, Oil spill response equipment, Deployment, Shipowner, Maritime facility

1. 서론

▶ 방제선등의 배치 의무화

✓ 1995년 Sea Prince호 사고를 계기로 잠재적 해양오염 유발 대상인 선박과 해양시설(기름저장시설)에 대해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대비차원에서 방제선등의 배치를 의무화함

▶ 현행 제도와 개정 필요성 제기

- ✓ 현행법에 따라 선주나 시설주 등 방제선등의 배치의무자가 단독, 공동 또는 위탁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위탁 배치는 해양환경관리공단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 그러나 20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방제선 위탁배치제도는 경쟁제한적 특성이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규제조정실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2015년 11월 방제선 위탁배치는 공공영역이 아니므로 민간방제업체에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 ✓ 이에 방제선등의 배치와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자 함

B. 배치의무 이행의 감시(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감시) 제1항(제1호) 호(생략)
 2.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부여함.
 1. ~ 7. 생략
 8.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 및 보고 등의 명칭
 가. 국내항선에 관한 것은 대한민조선배
 나. 국제항선에 관한 것은 대한민조선배외국선 제19조제1항제1호
 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선박
 라. 제119조제2에 따른 포상선의 지중
 9. ~ 10. 생략
 11. 해양경찰청장 등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부여함.
 1. ~ 2. 생략
 3. ~ 4. 제67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규칙 또는 시설안전관리규칙
 5. ~ 11. 생략
 12. ~ 13. 제155조제3항 및 제156조에 따른 출입검사 및 보고 등의 명칭
 13. ~ 18. 생략
 19. 생략

▶ 출입검사 규정

- 현행 규정에 따라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고,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사안에 따라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음
- 시설에 대한 방제선등의 배치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담당하고 있으나, 선박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행됨
- 다만,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선박안전관리규칙 또는 시설안전관리규칙의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방제선등의 배치 이행여부의 확인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2. 방제선등의 배치에 관한 규정의 이해

A. 방제선등의 배치의무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함)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비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함 선박에 한함)
 3. 선고인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톤이 넘는 기름저장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비치·설치하거나 이를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비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안전관리규칙 또는 시설안전관리규칙을 명령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장비등을 비치·설치하게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비치·설치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때에는 공동 배치·설치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방제장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총톤수 500톤 이상 유조선, 1천톤 이상 선박 그리고 1만 톤이 넘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의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규정에 따른 지역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함
- 이러한 의무는 단독, 공동 또는 공동에 위탁할 수 있음
- 즉, 배치의무자는 소유자 자신이거나, 제67조 의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에 의한 의무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
- 또한, 위탁을 공동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을 통한 의무의 이행은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의 형태로 다른 민간업체를 의무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단독배치의 경우, 선박·시설은 직접 운영하는 자회사로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공동배치의 경우도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자회사의 설립은 가능할 것임

4. 결론

▶ 방제선등의 위탁 배치의 개방에 따른 규정 개정

- ✓ 현행의 규정으로는 해양오염방제업체 등에 대해 방제선등의 배치의무의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법 제67조 등)의 개정이 필요함
- ✓ 해양경찰청에 의해 관리·감독되고 있는 해양오염방제업체 등에 대해서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미국, 중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업체들의 관리·감독과 배치의무자들의 위탁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등급이나 기타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 배치의무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

- ✓ 배치의무는 만일에 대비하여 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임을 고려하여 업체의 위탁을 개방함과 동시에 이들의 방제능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 그리고 현행법에는 선박의 배치의무 이행에 관한 출입검사 규정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선박안전관리규칙 등의 명령권한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에 대비되므로 출입검사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이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정이 요청됨

* First Author : chlim@mmu.ac.kr

† Corresponding Author : jhyun@kmou.ac.kr